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대상에
‘도로’ 추가 및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220694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도로’ 추가 및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안 제12조)	2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220694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도로’ 추가 및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¹⁾이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현행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외에 ‘도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u> 등을 하는 경우 <u>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u>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 ----- <u>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u> <u>에 대한</u> ----- ----- <u>교통수단, 여객시설 및</u> <u>도로에</u> ----- -----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철도차량, 궤도차량, 민간항공기, 선박, 광역철도를 말하고, ‘여객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3)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궤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무역항 및 항만시설, 광역철도 여객시설을 말함.

한편, 법 제9조4)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⁵⁾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을
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 ③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참고 참조).

법 제10조제1항⁶⁾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11조제1항⁷⁾에서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

3. 도로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크게 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 ③도로로 구분하고 각 대상시설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12조에서는 기준적합성 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교통행정기관이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③도로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도로’를 추가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외에 도로에 대해서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도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 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 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 는 음향신호기
가. 도로	○	○	○	○	○
나. 준용도로	○	○	○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다만,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주체를 ‘교통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⁸⁾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그런데, 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⁹⁾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도로법」 제6조¹⁰⁾), 「도로법」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케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10)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

제31조¹¹⁾에 따라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고 있음.

법 제12조제1항은 면허 등의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거쳐 이동편의시설이 법령상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면허 등을 주도록 하여 행정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계획수립 및 건설·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도로의 경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기준적합성 심사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법 제12조제2항에서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1)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안 제12조제2항은 현재 재량 규정인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호¹²⁾에서는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편의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³⁾.

다. 국토교통부 의견

도로의 건설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게 되므로 법 체계상 부적절하며, 기준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13) 참고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22)”에서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 부족을 우려한다고 표방하고 있어 이러한 참여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1. 교통수단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한다)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여객시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마.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한다)
-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 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자.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